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전태환 ■ 공정위 전자거래보호과 사무관

I. 방문판매법 하위규정 개정 진행경과

금년 2월말에 국회에서 의결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개정법률안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및 총리령 개정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법률안에서는 법률의 전체 체계가 정해지지만,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하여지는 사항이 많으므로 소비자 및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완화하여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및 소비자보호지침 등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도입한 것이 그 특징이다.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에서도 이러한 기본구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법률안에서 달라지는 내용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중요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안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약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방판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은 “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이라 한다.

II. 개정법률안 및 하위법령의 주요내용

1. 법 적용대상

■ 법 적용제외 재화 등의 조정(방판법 제3조, 시행령 제5조)

현행법에서 법 적용제외 품목인 의약품·유기증권·농수축산물 판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방

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계약서 교부의무·청약철회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농수산물 및 방문판매업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의 경우 방문판매원의 수가 2인 이하인 소규모 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비자의 범위 확대(방판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일반 소비자가 소비하기 위해 재화 등을 구입하는 경우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에는 의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과정에 필요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과점에서 빙수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는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일반 소비자와 동일하게 빙수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당해 재화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와 조건에서 당해 재화 등을 구입한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 방문판매의 범위 조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현행 규정에는 노점·이동판매시설·임시판매시설 등이라도 반복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여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3개월 이상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방문판매에 속하도록 한다.

한편, 현행규정에는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우편·전기통신설비·광고물·음향기기 사용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방문판매로 보았으나, 방문판매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비판이 있어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로 방문판매의 범위를 한정한다.

■ 전화권유판매(현행 규정상 통신판매)를 방문판매에 준하도록 함(방판법 제2조제3호)

전화권유판매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매를 권유하는 판매방식으로서, 전화를 이용하는 면에서는 통신판매로 볼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판매활동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방문판매에 준하여 법을 적용한다.

■ 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를 새로운 규제대상으로 추가(방판법 제28조~제32조)

계속거래는 우유배달, 학원수강 등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이고, 사업권유거래는 고가의 컴퓨터, 자동판매기 등을 구입하면 구입한 상품을 이용하는 사업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래이다. 양 거래는 당사자의 거래관계가 일정기간 계속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중도해지권이 보장되며 해약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제한된다.

2. 재화 등의 판매 및 청약철회

■ 청약철회기간의 변경(방판법 제8조, 제17조, 시행령 제25조)

현행 규정은 방문판매 10일, 다단계판매는 20일 안에 철회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 모두 동일하게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은 현행 규정에는

무제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청약철회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환금이 일정비율로 감액된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보고하여 과다하게 재고를 보유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 **다단계판매의 경우 판매원에 우선적으로 철회해야 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는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방판법 제17조, 시행령 제23조)**

개정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철회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되어 철회할 수 없거나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를 하였으나 3영업일 이내 환불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철회할 수 있다.

■ **소비자가 청약철회권 행사시 재화대금의 환급을 '다음 영업일'에서 '3영업일 이내'로 완화(방판법 제9조, 제17조)**

■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시 결제업자의 협력의무 규정(방판법 제9조, 제17조)**

소비자가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결제업자는 판매자의 환급의무 이행확보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소비자는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3. 다단계판매제도의 개선

■ **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확대(방판법 제2조)**

다단계판매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다단계판매조직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 **다단계판매업 자본금 규모(방판법 제21조)**

현행 대통령령에서 다단계판매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실질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 대통령령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판매대상 상품 가격상한(방판법 제23조제1항제13호)**

현행 대통령령에서 개별 상품의 가격상한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 대통령령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15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지급 기준(방판법 제20조)**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지급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판매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현행에는 후원수당의 지급한도가 일률적으로 총 판매액의 35%로 되어있으나, 개정 시행령에는 총 판매액의 40%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재화와 용역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한을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다단계판매원 모집시 정보제공의무(방판법 제21조)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을 모집할 때 평균후원수당 및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고소득을 올린다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사례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방판법 제15조)

공무원·교사 및 방문판매법 위반자 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다단계판매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판매업자의 연대책임(방판법 제27조)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이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판매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 및 공제조합 설립(방판법 제34조, 제35조)

현재의 공탁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보증·공제조합 중 하나의 가입을 등록요건으로 하였다(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등의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유사항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재화 등의 환불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험대상으로 한다. 다단계판매업자 및 방문판매업자 등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법 위반행위의 시정 및 소비자피해의 구제

■ 법 위반행위 시정수단의 다양화(방판법 제37조, 제41조~제44조)

현행에는 법 위반행위로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이고 소비자피해의 구제는 민사소송에 의존해야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비자보호원 등의 소비자분쟁조정 기구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합의에 의한 피해구제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공정위에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시도지사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형사벌의 제한적 활용(방판법 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공정**